

## 2002 농림사업 시행지침 전문요약

# 고품질 우량종자개발 산지유통 활성화 주력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

**▲목적:**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육·채종 시설과 육종 소재비를 지원,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추진방향:**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채소 및 화훼·과수·버섯 분야의 종자개발을 지원하고 특히 업체별로 지정된 전문작물을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 업체별 품종 전문화를 유도한다. 경쟁력 있는 중소업체 및 개인육종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지원대상자:**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가 지원대상이다.

**▲지원단가 및 조건:** 육·채종 시설의 경우 기준단가 및 시가율 적용해 지원한다. 저온저장고의 경우 한평당 200만원, 일반창고는 한평당 70만원, 실험실은 160만원, 온실은 130만원, 망실 및 비닐하우스는 5만원, 고속원심분리기와 전기영동기 등 첨단유전공학기자재 및 종자품질관리기자재는 시가율 적용해 지원한다. 품종 육성의 경우 품종당 5,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단가를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융자 70%, 자부담 30%이며 연리 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올해 지원되는 예산:** 올해 예산은 27억7,600만원이 융자 지원된다. 육·채종 시설 및 기자재와 품종 육성에 대한 세부 지원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업체 및 개인육종가의 신청을 기초로 예산을 분배한다.

**▲대상자 선정기준:**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주시설 소재지 시·군에 사업을 신청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가 원칙적인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종자분쟁으로 농업인의 민원이 제기됐던 업체는 제외되며, 최근 1년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배정된 예산을 불용처리한 업체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용조사 결과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도 제외된다.

업체별로 지정된 전문작물의 신품종 개발의 경우 우선순위로 지원되고 육·채종 시설은 저온저장고·실험실·온실 등이 우선한다. 또 최근 3

년간 종자수출이 많은 업체도 우선 지원되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조생양파·방울토마토·당근·시금치 등의 신품종 개발사업에 우선지원된다.

**▲선정절차:**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품종개발 계획과 시설 및 기자재의 용도, 융자담보 능력 유무, 신용보증기금 활용가능 여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시·도를 경유, 농림부에 제출한다.

농림부에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사업 담당부서:** 농림부 농산과(전화02-500-1774~5)와 시·도농산유통과(원예유통과 또는 유통특작과), 시·군 농림과(농정과) 등이다.

## <농산물 산지유통기반확충>

### -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대상:** 생산자단체(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시장·군수(지자체 포함), 도매시장법인 등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유통업체 등이다.

**▲지원자금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 건물(350평-집하 선별 포장장·예냉·저온저장고·사무실·기타 건물), 기계류(선별기·결속기·봉함기·제합기·컨베이어 등), 장비류(냉장탑차·펠릿·운반상자·지게차·수송차량) 등이 해당된다.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예 비파괴 당도 측정기·PC 등)도 설치할 수 있으나 단가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지원조건:** 생산자단체는 국고보조 20%, 융자 4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 20%이며 시장·군수는 국고보조 70%, 시·도(시·군)비 30%, 유통업체는 융자 80%, 자부담 20% 등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사업 규모는 시장·군수 15억원, 기타는 8억원이 기준이다.

**▲지원내용:** 집하선별포장장과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100평 이상이어야 한다. 산지유통전문조직의 마케팅 시설을 최우선 지원하며, 이 경우 시설규모에 제한이 없다.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 일괄지원을 원

적으로 하되 예냉·냉장수송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산지유통센터 운영지원

**▲지원대상:** 농산물유통센터로서 운영실적이 있거나 운영자금 신청일 현재 건축 준공검사를 마치고 당해연도에 운영 예정인 자, 생산자단체가 보유한 유통시설중 200평 이상 규모로 실제적으로 운영실적이 있는 자 등이 대상이나 산지유통전문조직 유통활성화 자금을 지원받은 조합은 제외된다.

**▲지원조건:**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융자는 연리 5%, 1년 이내 상환 조건이다.

**▲자금 사용용도:** 원료농산물(곡물류 제외)의 매취 및 출하선도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출하선도금은 50%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지원받은 금액의 125% 이상 유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 담당부서:** 농림부 유통정책과(전화: 02-500-1829~30), 농수산물유통공사(전화 02-793-5006), 농협중앙회(전화 02-360-5814),

##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

### - 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

**▲지원대상 및 대상품목:** 품목별 전국협의회에 1개 품목 이상 가입한 지역농협·전문농협·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이 대상이다. 단 화훼품목 생산자조직은 예외다. 대상품목은 품목별 전국협의회에 가입한 품목이고, 대상사업은 매취사업·계약재배사업·유통설비 및 자재구입비, 규격출하 선도금 등이다.

**▲신청기관:** 농협중앙회 과수화훼부(전화 02-397-7238),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전화 02-790-8013)에서 담당한다.

### -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

**▲지원대상:** 선도적으로 판매사업을 추진하는 산지농협과 지역적으로 인접한 다수의 조합이 연합한 연합판매팀이 지원대상이다. 또 영농법인이나 농업인이 주주인 상법상 회사 형태의 단일 마케팅 법인을 설립해 전문기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는 조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 조직은 최근 1년간 양곡류를 제외한 매출실적이 50억원 이상이거나 향후 3년 이내 100

만원, 홍보물유인비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농림부로부터 시설비를 지원받아 운영 중인 업체 가운데 성장유망업체와 시설현대화·자동화·개보수 등을 통해 경영활성화가 가능한 업체 및 주류제조면허 취득업체, 전통식품 명인,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예산액이 발생할 경우 농림부장관이 이미 지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자부담 포함)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사업비와 지원액:** 총 사업비는 5,000억원이다. 한 조직당 지원한도액은 70억원이지만 광역조합, 연합사업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조합, 자조금 또는 유통명령제 시행조합은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연리 3%에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해야 한다.

### - 공동규격출하 촉진

**▲지원대상 및 대상품목:** 농협의 자목반(회)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지원대상이다. 단 이 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 자금지원 조합과 체소수급안정사업 지원품목 등의 자금을 지원받은 조직은 배제된다.

대상품목은 농산물 표준출하구역 제정품목으로 하되 우선지원대상 품목과 추가지원대상품목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우선지원품목은 무·배추·당근·오이 등 14개 품목이고, 추가지원대상품목은 지역 특성에 맞게 시·군별로 3개 품목 이내에서 가능하다.

**▲사업비 및 신청기준:** 총 사업비는 1,048억7,500만원으로 융자 80%에 자부담 20%이다. 지원받은 자금은 공동규격출하 선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자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은 산지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 <농촌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시설비(전통식품 및 산지 일반가공 사업) 지원대상은 농가 5가구 이상이 공동 출자하고 운영에 참여한 공동조직과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및 주류제조면허업체, 명인 또는 신지식인 지정업체, 일반업체 등이다. 운영비(포장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농림부 지원 농산물 가공업체,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 지정업체, 주류제조면허업체 추천을 통해 면허를 받은 업체 등이다.

**▲지원기준 및 조건:** 농기공동의 경우 7억원,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는 20억원 이내에서 시설비의 70%를 융자 지원한다. 운영비는 업체당 최고 2,000만원의 포장디자인개발비와 용기금형개발비 8,000

##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

### - 농산물 물류 표준화

**▲대상사업:** 펠릿(50장 이내)·플라스틱상자(500장 이내)·지게차·광폭차량·비파괴 당도측정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선과기·밴딩기 등 부대시설비도 포함된다.

**▲지원대상:** 농협 등 생산자조직과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산물공판장 입주 도매법인, 수집상,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농협유통, 정부지원 가공공장·저온저장업체 등이다. 2억원 한도로 지원하나 비파괴 당도측정기는 초과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기준:** 펠릿 및 플라스틱상자를 임대 사용하는 경우 수송용 펠릿은 한장당 1,500원, 디란식 나무상자는 1,145원, 플라스틱상자는 490원이다. 저온용 펠릿은 한장당 27원, 플라스틱상자는 7원이다.

**▲지원대상:** 생산자조직과 공영도매시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연합회원이다.

**▲사업 담당부서:** 농림부 유통정책과(전화 02-500-1823), 시·도(시·군)의 농정과 또는 농산물 유통과.

### -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대상:**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대상은 1. 농림부의 지정을 받은 산지유통 전문조직의 규격포장 출하농산물 2. 포장화 우대품목 생산조직 및 산지유통인 3. 기타 시·군이 지원하는 생산자조직 등의 포장농산물이다.

**▲지원기준:** 모두 국고에서 30% 보조와 자부담 70% 지원 범위는 똑같다. 단 1. 산지유통전문조직은 신청 제작한 수량의 100%와 선별비율의 일부를 지원한다. 2. 포장화 우대품목은 국고 30% 범위내에서 규격출하 수량의 100%를 지원한다. 3. 기타 생산자조직 포장재는 국고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